

EU, 덴마크에 GM식품 피해보상 허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덴마크 정부가 재래식 작물이나 유기농 작물에서 유전자변형(GM) 물질이 발견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식 허가하였다. 이것은 집행위원회가 국가 보조를 공식적으로 인허한 첫 사례이다. 이러한 보상은 GM 물질 함유량이 0.9%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규모는 유전자 조작 물질 함유를 표시해야 하는 작물과 표시할 필요가 없는 작물 간의 시장가격 차이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 보상제의 재정은 전적으로 GM 식품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된다.

재래식 작물과 GM 물질이 섞이면 GM 포함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며 그만큼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유기농 산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까지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보상을 받는 농산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덴마크 정부의 보상 계획은 전적으로 GM 작물 생산자에게서 재정을 확충하여서 보상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GM 물질이 섞이면서 발생하는 농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GM 작물 재배자가 매년 ha당 100DKR(13.4 €)씩 납부하는 임시 재정세(parafiscal tax)로 마련한 재원으로 보상한다. 그리고 보상제의 운영은 덴마크 정부가 담당한다.

정부의 보상금은 GM 물질이 재래식 작물과 유기농 작물 생산량의 0.9%를 초과하여 유럽연합 법률(GM 식품과 사료에 대한 Regulation (EC) No

1829/2003)에 의거해 작물에 GM 식품이라는 라벨 표기를 해야 할 때에만 지급된다. 보상액의 규모는 공식 시장 가격 중 유전자조작 작물과 재래식 혹은 유기농 작물과의 가격 차이 내에서 이루어진다.

덴마크 법령 하에서는 GM 작물 재배자도 보상액 지급과 관련한 도의적·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덴마크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유전자변형물질 확산의 원인이 된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 보상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보상 기금은 가능한 한 빠르게 민간 보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상제도는 5년까지 유효하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보상제가 GM 작물과 재래식 혹은 유기농 작물이 공존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상제의 전액은 GM 작물을 재배하는 덴마크 농민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보상 받던 작물이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될 시점에는 보상 기한이 끝나서 시장 왜곡의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상제를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시켜 유럽연합 정책이 지향하는 공존의 방향과도 합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국가 보상 법률(EU state aid rules¹⁾)에 의거하여 보상제를 허가하였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1) Article 87(3)(c) of the EC Treaty